

제 654 호
1978. 4. 2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丁 작 출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전화 :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청합판간선
전화 :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237 호 :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... 3

◎ 고 시

제 183 호 : 도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..... 4

제 184 호 : 도로계획시설 (도로, 광장, 지하철도, 미관광장)
결정 및 지적승인..... 4

◎ 공 고

제 170 호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결정
공람공고..... 5

◎ 사 명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8. 4. 29.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287 호

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
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중 '도로법 제 43 조
제 1 항' 다음에 '및 제 80 조의 2'
를, '도로점용료' 다음에 '및 부

당이특금'을 각각 삽입한다.

제 4 조 (점용료의감면) 중 '점용료' 다음
에 '및 부당이특금'을 삽입한다.

제 5 조 (점용료의징수시기) 제 1 항에
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 2
항의 '점용료' 다음에 '및 부당이
특금'을 삽입한다.

'다만, 부당이특금은 그 부당점용을
안날로부터 1월내에 부과 징수한다'

제 6 조 (징수) 제 1 항의 '허가시 받
부된'을 삭제한다.

제 7 조 (징수의위임)의 '점용료' 다음
에 '및 부당이특금'을 삽입한다.

별표중 제 7 호를 제 10 호로 하고
제 4 호, 제 5 호, 제 7 호 내지 제 9 호를
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

구 분	산 정 방 법
4. 주유소, 자동차수리소, 승강대, 화물지차장,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	1.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.
5. 주차장, 철도책도에 이들에 유 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	1.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.
7. 노상물출발 및 물품적치를 위한 점용	1.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다.
8. 광고용 물출간판 및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도로상의 공간점용	1. 간판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.
9. 차광막 및 이에 유사한 시설 을 위한 도로상의 공간점용	1.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
전설부고시 제 41 호 ('77.3.16)

및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시용군청에 비치하여
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보인다.

1978. 4. 28.

서울특별시 장

번호	종 류	공 원 명	위 치	면 적 (평)		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
15	15	자연공원	경기도 시용 과천 관문리 65부근	15,472,174	(하) 604,961	16,077,135

* 별첨 도면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4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, 광장, 지하
차도, 미관광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,
교통광장, 지하차도, 미관광장) 을
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
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

조, 전설부고시 제 41 호 ('77.3.16)
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4. 29.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시설	중로	1	186	20m	525m	광 20 호선	광 20 호선	

○ 지하차도결정 및 지적승인조서								
구분	위 치		규모	비 고				
신설	잠실동 1구획 (정신여고)		폭 = 10m 연장 = 235m					
○ 미관광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								
구분	위 치		면 적	비 고				
신 설	잠실동 1 구 획		2,270 ㎡					
○ 교통광장 지적승인 조서								
구분	번호	광 장 명	위 치	면 적	비 고			
신설	117	종합운동장광장	잠실운동장 남측	15,700 ㎡				
○ 도로지적승인 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광로		51	40	1,100	신천동(중2-123)	잠실동(대 1-22)	
별첨 도면참조 (도면생략)								
공 고								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0 호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공람공고 1. 건설부고시 제 136 호 (75.8.25) 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여 1.3 구역								
에 대하여 2. 도시재개발법 제 42 조와 동법 제 65 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31 조에 따라 서울시공고 제 225 호 (75.9.25) 로 공람공고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보이고 있다.								

3. 동 구역의 정착지로서 토지매각
은 본 공고일로부터 중지되며 연
고권은 기 매수자와 현재 건축물
이 있는 토지에 부여되었으며 관
제도시에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
개량과에 비치하였고 공람기간내에
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
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
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개별 통
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
공고로 가름한다.

1978. 4.29

서울특별시장

사 령

◎ 1978. 4.27

동대문구 강병학
지방토목기원보시보

인사 214- (78.3.30 자)
신규임용을 미착임으로
동일자로 취소함.

영등포구 김학운
지방기계기원보시보

인사 214- (78.3.30 자)
신규임용을 미착임으로
동일자로 취소함.

◎ 1978. 4.28

최윤석

지방토목기사에 입함.
23호봉을 급함.
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

윤수 2과 정학진
지방행정주사
육군본부 파견을 명함.
(78.5.4 ~ 78.5.13)

◎ 1978. 4.29

영등포구보진소 윤명순
지방외무기정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◎ 1978. 5. 1

영선과 오석봉
지방건축기원보
복직을 명함.
3호봉을 급함.
영선과 근무를 명함.

◎ 1978. 5. 3

경북영덕군 주연호
지적기원보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지적기원보에 입함.
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장